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	보다 나은 정부
	배포일시	2018. 11. 29(목) 총 3 매	
담당 부서	건축문화경관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경석, 사무관 방대혁, 주무관 허연희 • ☎ (044) 201-3778, 3782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국회 본회의 통과

□ **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'건축기획'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**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(건축서비스법)」 일부개정법률안이 **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**

○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임에도 불구하고,

○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형식적 기획과 관행적 절차로 획일적 디자인, 과다설계, 기능중복, 주민배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.

□ 이번 **개정안의 주요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① '건축기획' 개념 규정 명문화

○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**사업 기본구상, 공사수행방식, 공간구성 등의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'건축기획' 업무**를 정의하였다.

* 건축기획 관련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우선 적용(안 제4조)

② 건축기획 업무 절차 규정

○ 사업초기에 사업계획에 대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**사전검토**를 받도록 하는 현행 **제도 외에,**

○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**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,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** 등을 **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**토록 규정하였다.

※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별로 설치하되, 미설치시 기존 위원회로 대체가능
- 지자체: 지역건축위원회, 지방건축위원회(지역건축위원회가 없는 경우)
- 국가 및 기타 공공기관: 중앙건축위원회

③ 사전검토 내실화

○ 사전검토 업무기관으로 現 공공건축지원센터(auri) 외에 시·도지사, 시장· 군수·구청장 등의 **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를** 마련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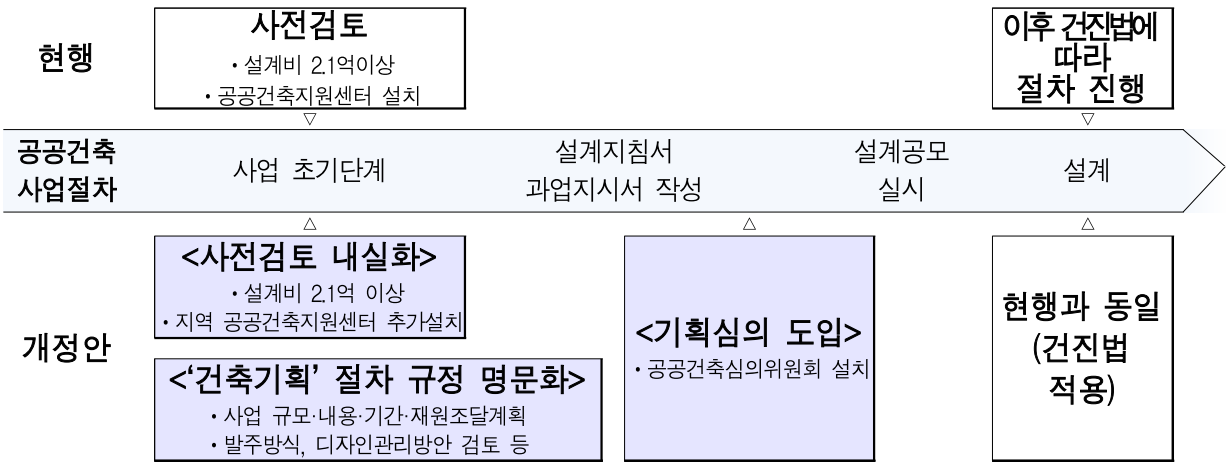

☞ 이번 「건축서비스법」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,

○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**초기단계**에서의 기획 업무가

대폭 강화되어, **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**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**공공적 가치**와 **디자인 품격**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방대혁 사무관(☎ 044-201-377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